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30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한정애·송옥주·문진석

조인철 • 이광희 • 이병진

이학영 · 조정식 · 이재강

이언주 • 박홍배 • 박홍근

이원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,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.

이와 관련하여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662호)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·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,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, 입법체계를 정비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동·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·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 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·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,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·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·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대통령선물의 관리) ①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(이하 "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대통령선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·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 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 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 중 "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(이하 "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"이라 한다)"을 "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관받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7조의2(대통령선물의 관리) ① |
| |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 |
| | 관(이하 "대통령기록물생산기 |
| | 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대통령 |
| | 선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 |
| | 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 |
| | 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|
| | 관리하여야 한다. |
| |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|
| |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|
| | 생산·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 |
| | 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|
| |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 |
| | 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|
| |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 |
| | 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|
| | <u>있다.</u> |
| |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|
| |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|
| |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|
| | 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 |
| |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 |
| | 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 |

제8조(전자적 생산·관리)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(이 한 "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"이 라 한다), 대통령기록물생산기 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지수 작으로 생산·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,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한다.

| | <u>탁</u> | 하여 | 권 | <u> </u> | 하거 |] 7 | 할 | 수 | 있 | <u>다.</u> |
|---|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| <u>0]</u> | 경 | 우 | 대분 | 통령 | フ] - | 록관 | · | 장 | <u>은</u> |
| | <u>수</u> 1 | 탁빈 | 은 | フ | 관 | 또 | 느 | 개약 | 인 에 | 게 |
| | 예/ | 산의 | 받 | 위 | 내 | 게소 |] ½ | 필요 | 한 | 물 |
| | 품 | 및 | 비] - | 용을 | · 지 | 원 | 할 | 수 | 있다 | <u>}.</u> |
| 제 | 8조 | (전 | 자격 | 덕 시 | 생산 | ٠ ڔ | 관리 |) <u>t</u> | 개통 | 궝 |
| | <u> 기</u> | 록물 | - 생/ | 산기 | <u> </u> 관- | | - – – | | - – –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